

제 3 장

추후보도 게재 사례

제3장 추후보도 게재 사례

사례 29 2020서울조정284·285/286·287 / 각 추후·손배청구

신청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재정신청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100억대 자산가인 할아버지가 자신의 수십 억대 재산을 가로챘다며 손주와 손주 며느리인 신청인들을 증여 계약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적시한 채 신청인들이 마치 계약서 위조 등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추후보도 및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검찰 수사 결과, 손주와 손주 며느리는 보도된 혐의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심리 당시 A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재정신청사건 기각 시 추후보도를 방송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수용하여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할아버지

전혀 이게 그냥 B(손자)가 단독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그런 거 의논이 있었는지. 우리가 온 거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할아버지의 증여계약 담당자

서류가 전부 날인돼갖고 왔었어요. 저하고는 모르는 거고. [중략]



할아버지

참담하죠. 해주지도 않은 걸 해준 걸로. 그렇게. 그게 당사자가 했다는 게 더 참담한 거죠. 법 자체가 허점이 되는 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악용을 하는 거가 그게 잘못된 거죠.

C / 변호사

인감도장만 있으면 다 위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여계약서도 서명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도장 찍으면 되는 거고.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본인 확인서면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으면 되니까. 인감도장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거죠, 사실은. 만약에 뭐 등기소 가게 하려면 뭐 서명, 뭐 날인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서명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중략]

내레이션

모든 상황들이 할아버지가 증여의사가 없었던 걸 보여주고 있지만. 서류에는 이미 인감도장이 찍힌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살면서 손자에게 돈이 아닌 다른 걸 줬으면 어땠을까? 돌아보니 후회가 남았습니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 방송은 조정대상보도에서 할아버지와 손자 간 재산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산분쟁 중 ‘증여계약서 위조 혐의’에 관해서는 D지방검찰청은 작년 10월 14일 위 피의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한 할아버지의 항고가 A고등검찰청에서 올해 1월 3일, 재정신청은 A고등법원에서 ○월 △일(판결 후 수정 : 4월 29일) 기각됨에 따라 해당 무혐의 처분이 확정됐기에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피신청인은 A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2020***** (재정신청) 사건이 기각될 경우, 신청인들의 서면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송 프로그램에 위의 보도문(본문 내용 중 ○, △는 재정신청 기각일로 반영·표기한다)을 진행자가 통상의 진행 속도로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위의 보도문을 통상의 자막 크기와 동일하게 표시한다. 단,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사례 30 2020서울조정1103 / 추후청구

조정신청 이후 피신청인이 무혐의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를 게재하여 신청을 취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 학생들이 집단으로 다른 학생을 보복 폭행했다고 방송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은 위 보도에 언급된 피의사실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A군의 일방적인 입장만 다루어 단정적으로 보도됐고, 사안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신청인이 특정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추후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신청인은 보도에 언급된 A군 폭행 혐의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하는 보도문을 게재하면 피해자인 A군의 2차 피해가 우려가 우려되어 추후보도 게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신청인이 폭행 혐의에 관해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러한 내용의 추후보도를 원하는 것인지 질의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협의하겠다고 답변해 기일을 속행했고 2차 심리 전 추후보도를 게재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은 취하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1년 넘게 친구들의 폭행에 시달려온 14살 A군.

가해 학생 4명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A군은 어제(27일) 새벽 또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친구들이 찾아와 때린 것입니다.

A군 피해 학생 : 너 때문에 내 친구들 다 (감옥) 들어가게 생겼다. 소년원 가게 생겼다 이런 말 하면서 폭행을... [후략]



■ 조정신청 후 보도문

보도내용

위 A군의 27일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자로 지목된 가해 학생은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모텔 내부에서의 폭행에 대하여 B지방검찰청의 무혐의 처분(2020.2.6.)을, 이에 앞서 발생한 모텔 밖 폭행에 대해선 같은 날 기소돼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31 2020서울조정1840·1841·1842·1843/1844·1845·1846·1847 / 각 정정·반론·추후·손배청구

신청인이 정정·반론·추후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무혐의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에 한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센터 내에서 교사의 성추행, 폭력, 약물강제 복용 등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방송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신청인 1인 A센터에서는 소속 지도교사의 성추행 범죄 사실을 확인한 후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하였고, 검찰 수사 결과, A센터의 소속 복지사인 신청인 2와 신청인 3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정정, 반론 및 추후보도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문 요지

- 신청인 센터에서 야간지도교사의 개인 일탈행위가 발생하였으나 범죄사실을 확인한 후 즉각적인 직무정지 조치 및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 해당 센터에서 피해 아동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각종 조치를 실시했다.
- 해당 센터에서 아동 폭행, 학대, 가혹행위 및 약물강제 복용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복지사 2명(신청인 2, 3)을 비롯하여 센터 및 구성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검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조정결과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청구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무혐의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전략] A센터 퇴소자 B : 청소가 잘 안되어 있거나 그러면 강당으로 모이라 그래요. 모이면은 선생님 앞에서 1배, 2배 숫자 세고 108배를 계속하는 거예요. 50명 중에 한 명이 10배 정도 하다가 다리가 아파서 자세가 흐트러지면 개 대놓고 지목해서 재 때문에 10개 추가라고 그러면 다들 개만 원망하죠.

A센터 전 직원 : 그 아이가 약을 먹고 운동장에서 허공을 멍하니 동공이 풀렸는데 허공에 멍한 채 이렇게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왜, 너무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놀라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약을 먹고 멍해요' 그러는 거예요. [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 결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약물강제 복용 여부) 혐의에 대해 지난 7월 21일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방송 프로그램에서 위의 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위의 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단, 방송 시에는 위의 보도문 중 괄호 안의 멘트를 삭제한다.
- 프로그램 인터넷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 게시글 상단에 위의 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의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이후에도 해당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홈페이지에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정대상기사 다시보기 하단에 위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사례 32 2020충북조정41·42 / 추후·손배청구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보도한 데 대해 추후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한 사례

■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초등학교 교사인 신청인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등을 한 의혹이 제기돼 교육당국 및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 신청취지

신청인인 A교사는 학부모 측 고발사건 대부분이 혐의 없음 또는 각하로 불기소처분으로 확정됐음을 들어 추후보도 및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추후보도문 요지

- A씨는 학생들을 자료실로 보내 필기를 하게 하거나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학대한 바 없다.
- A씨와 관련된 다수의 혐의가 보도된 후 대부분의 형사절차가 혐의없음으로 처분 확정됐다.

■ 조정결과

중재부는 추후보도에 관하여는 양측 협의 여지 있으므로 보도문안을 협의하되, 손해배상청구는 신청인이 양보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B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가 갓 학교에 입학한 1학년생들을 학대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제기돼 교육당국 등이 조사에 나섰다. [중략]

학부모들은 수업시간에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은 A교사가 필기구를 가지고 빈 교실(자료실)로 보내 반복적으로 필기를 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아이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말을 잘 듣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학대받았다고 주장했다. [후략]



■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B시 소재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 의혹으로 교육당국 및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후 확인 결과, 해당 교사 A씨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말을 잘 듣도록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거나 “필기구로 아이의 얼굴을 찌러 멍이 들고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적, 성적인 학대까지 있었다”는 C학생 학부모 측 고발건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 19일 및 같은 달 26일에 각각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또는 각하(상습감금 등 포함)로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C학생 학부모가 같은 취지로 2020년 고등검찰청에 재차 항고한 고발건의 경우도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및 항고 기각에 이어 2020년 11월 18일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으로 처분이 확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회>면에 위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해당 보도문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표기하고 그 제목을 선택하면 보도문 본문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해당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이어 게재한다.
- 위에 따른 게재 시, 처음 48시간 동안 위의 보도문 제목이 해당면 기사목록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해당 보도문을 기사DB에 보관하여 지속적으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의 사항을 전송한다.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